

## 남양주시 공고 제2021 - 1000호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남 양 주 시 장

###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위임근거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조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명 변경 (안 제명)
  - (현행)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변경)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나.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방세기본법 위임근거 명시 (안 제1조)
- 다.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정비 및 명확화 (안 제3조, 제15조)

-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안 제8조제4항)
- 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리 (안 제16조제3항)
- 바. 조항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수정 및 그 밖의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3. 자치법규안 : 별첨

####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 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징수와 징수기획팀(☎031-590-8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185-10)  
팩 스 : 031-590-2199 / 전자메일 : jingjing@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조례 제 호

##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따른 고발 등을 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세의무”를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을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세목별 총 부과액(시세에 한정하며,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를 포함한다)이 50만원 이상인”으로, “징수액”을 “부과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진의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말하는 “징수액” 또는 “부과액”이란 과세 1건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2항(중전의 제3항) 단서 중 “미수액중”을 “미수액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항) 제1호 본문 중 “의한 미수금징수”를 “따른 징수액 또는 부과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중복되는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산업경제 업무 담당국장”으로,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1항 중 “직무”를 “사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장”을 “회의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위원장은”으로, “위원장이”를 “회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중 “지급신청 자”를 “지급신청자”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지급 받고자”를 “지급받고자”로, “규칙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바”를 “제14조의 공적심의 결과”로, “날로”를 “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를”을 “지급한 포상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 받”을 “지급받”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징 수 과
입안자	담당관 · 과장 직위 · 성명	징수과장 김영미
	팀장 직위 · 성명	징수기획팀장 김미민
	담 당 자 성명 · 전화	서혜진 (031-590-8782)

현 행	개 정 안
<p>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p>	<p>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지방세정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필요한 사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u>----- -----</p>
<p>제2조(지급대상) ①·② (생략)</p> <p>③ 제1항제1호의“특별공적”이란 남양주시 지방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u>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u></p>	<p>제2조(지급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따른 고발 등을 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에 따라</u> ----- ----- ----- ----- -----</p>

우를 말한다.

1. ~ 4. (생략)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

-----.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 -----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세목별 총 부과액(시세에 한정하며,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를 포함한다)이 50만원 이상인 ----- 부과액-----

6. -----.

「공무원 제안 규정」-----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생략)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징수액”이란 미수금 1건당 징수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통하여 미수액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다만,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에 해당

-----.

7.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징수액” 또는 “부과액”이란 과세 1건당 금액을 말한다. ----- 미수액 중 -----.

제4조(지급한도) -----.

1. ----- 따른 징수액 또는 부과액 -----.

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2. (생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2.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 및 회계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

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위하여 -----  
-----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경제업무 담당국장-----  
-----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사무-----.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징수과장이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  
회의의 의장-----  
-----.

② 위원장은 -----  
-----  
----- 회의를 -----  
-----.

③ 회의-----  
-----  
-----.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  
-----  
----- 지급신청자-----

견정취 및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증명서류-----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 범위----- ----- -----.
제13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제1항 ----- 지급받 고자 ----- 「남양주시 세 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서 정하는 첨부서류----- ----.
제14조(공적심의회) ① 징수과장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공적심의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의회) ① ----- ----- 위원회----- -----.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공적심의회 결과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② ----- ----- 첨부서류----- -----

야 한다.	-----.
제1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공적심의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금 지급) ① ----- 제14조의 공적심의회 결과----- ----- 날----- ----- 해당 연 도----- - 다음 연도-----.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	제16조(환수)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 ----- 관계 공무원-----

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

② ----- 해당  
-----  
----- 지급한 포  
상금을 -----.

③ -----  
----- 지급받  
-----  
--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  
령」 제43조-----  
-----  
-----.